

## VII.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취직연령은 높아지고,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기간은 짧아져서 노후소득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높다. 더구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점진적으로 급부 수준을 인하하고, 수급 시기는 늦출 것으로 보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에 재량권과 통제권을 갖고 있는 수탁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다. 수탁자의 대규모 사기, 연금자산 유용과 같은 부정사건을 경험한 영국, 미국의 경우 감독당국은 수탁자가 가지는 리스크에 대한 감독 장치를 완비하려고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신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도 계약형 뿐만 아니라 기금형 등 다양한 법적 형태가 공존하고, 상품 및 자산운용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연기금에 대한 수탁자의 자유재량과 통제권이 높아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리스크감독 수준도 선진형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연금운용리스크 및 법규준수리스크 등과 같은 수탁자리스크에 대해 감독당국이 어떠한 감독방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리스크감독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제감독기구에서 권고하는 퇴직연금감독 기준, 선진국의 법·규정 및 감독 사례,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반 문제점을 비교·검토한 후에 국내 실정에 부합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퇴직연금 감독원칙 및 기준을 통해 수탁자리스크 감독 측면에서의 시사점, 그리고 선진국의 감독규정 및 운용사례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부합한 감독 방향성을 시안적인 측면에

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에 대한 감독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퇴직연금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감독은 운용규제 정도 및 지배구조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단기 및 중장기)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퇴직연금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감독 목적을 제도 활성화에 둘 것인가 아니면 건전성에 둘 것인가에 대한 사전 검토 후에 감독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퇴직연금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감독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면서 모색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감독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세부 측면에서 볼 때 특히 모니터링 및 의사소통 관련 부문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기 때문에 미진한 부문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과 관련된 측면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전적 감독방안의 확충이 필요하다. 연금부채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을 공식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 등 제3자적 감시 기능 강화는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보험계리사 및 공인회계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금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 관련 리스크감독의 경우, 근로자에게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내재한 리스크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수탁자의 법규준수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탁자리스크가이드라인과 같은 리스크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기반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는 양적·질적 기준에 의한 성과평

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감독의 향후 과제 측면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감독의 국제적 기준 및 선진국의 리스크감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감독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수탁자리스크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독당국 차원에서의 리스크감독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도입된지 1년에 불과한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선진형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탁자와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퇴직연금감독에 대한 국제적 기준, 특히 수탁자의 리스크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규정,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감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계기로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감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원해 본다.